2014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2014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 12. 31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근거법령 : 기획재정부령 제390호 (2013. 12. 31)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감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 감 면 율 : 30%
- 대상물품

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 제2항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7	8422 8442	40 30	자동포장기 「결속기, 포장기, 튜빙기 또는 동축 케이블 튜빙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2.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 · 정렬 포장 · 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3.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 또는 치즈) 이상인것
7	8428	90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8	8439	10 99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8441 8456 8464 8465 8475 8477	10, 80 10 10 99 29 8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 (Wire Saw), 클래빙(Cleaving)기, 절단기(Cross-cutting Saw) 또는 슬리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리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1천밀리미터당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3.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4.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11	8441	30	전분자동제어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 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